

한국체육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

일부개정 2019. 5. 8. 규정 제783호

1. 개정사유

- ‘대학 공개강좌 운영의 특혜소지 차단방안’ 제도개선 권고(국민권익위원회) 및 2019학년도 한국체육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최고경영자과정 원장 및 주임교수의 보직경비 지급 규정 삭제하고자 함.
- 공개강좌인 최고경영자과정의 수료기준이 강좌의 3분의 2이상을 수강한 자에게 수료를 인정한다는 것은 참여하는 구성원의 신분을 고려하여 출석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원장과 주임교수의 보직경비 삭제(안 제2조의2)
- 최근 추이에 따른 모집정원 및 수업일수 변경(안 제3조, 제9조)
- 과정의 특성 및 원생들의 신분을 고려한 수료기준 삭제(안 제11조)
- 자구 수정(인→명, “별지” → “별지 서식”) (안 제2조의3, 제11조제2항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없음
- 라. 붙 임 : 개정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

한국체육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문

「한국체육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3항 중 “원장과 주임교수의 보직경비 및 대학원 행정실의 필요경비는” 을 “대학원 행정실의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” 으로 한다.

제2조의3제2항 중 “7인 이상 10인” 을 “7명 이상 10명” 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100명” 을 “70명” 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24주” 를 “24주~28주” 로 한다.

제11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 “별지” ” 를 “별지 서식” 으로 한다.

부 칙(제783호, 2019. 5. 8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의2(조직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<u>원장과 주임교수의 보직경비 및 대학원 행정실의 필요경비는</u> 최고경영자과정에서 지급한다.</p>	<p>제2조의2(조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대학원 행정실의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</u>----- -----.</p>
<p>제2조의3(최고경영자과정 운영위원회) ① (생 략)</p> <p>② 위원회는 최고경영자과정원장, 대학원장, 사회체육대학원장, 교학처장, 최고경영자과정 주임교수를 포함하여 <u>7인 이상 10인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~ ⑦ (생 략)</p>	<p>제2조의3(최고경영자과정 운영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7명 이상 10명</u> -----.</p> <p>③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모집정원) 본 과정의 모집정원은 <u>100명</u>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</p>	<p>제3조(모집정원) ----- <u>70명</u> -----.</p>
<p>제9조(수업연한) 본 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, 수업일수는 <u>24주</u>로 한다.</p>	<p>제9조(수업연한) ----- ----- <u>24주~28주</u>-----.</p>
<p>제11조(수료) ① 본 과정에 개설된 강좌의 3분의 2이상을 수강한 자에게 수료를 인정한다.</p> <p>② 본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<u>“별지”</u>의 수료증서를 교부한다.</p>	<p>제11조(수료) ① <삭 제></p> <p>② ----- <u>별지 서식</u>----- -----.</p>
	<p>부 칙(제783호, 2019. 5. 8.)</p> <p>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